



## 1. 목적

본 지침서는 당사내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전주기관리를 통한 근로자 건강장해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당사내 직원, 근로자, 일용직, 협력업체, 용역 등으로 출입하는 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관련표준

### 3.1 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내용: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

### 3.2 화학물질관리법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 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관리를 통해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

### 3.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Toxic Chemical Control Act)

- 내용: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및 규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

### 3.4 안전보건공단(KOSHA) 기준

- KOSHA Guide: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 및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과 권장 사항 제공.

## 4. 용어의 정의

### 4.1 화학물질

원소 및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물질을 말한다.

### 4.2 제제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용제, 용제, 안정제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 4.3 혼합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두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말한다.

### 4.4 제조업자

자가사용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화학물질 또는 함유 제제를 생산, 가공, 배합, 재포장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 4.5 화합물

원소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되어 특정의 물리적 성질을 띠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 4.6 수입업자

판매 또는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화학물질을 반입하거나 이송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4.7 폭발성물질

산소 없이 마찰, 충격, 접촉시 폭발되는 물질을 말한다.

#### 4.8 산화성물질

다른 물질(특히 가연성 물질)과 접촉하여 심한 발열반응을 나타내는 물질을 말한다.

#### 4.9 인화성물질

인화점 21°C이상, 55°C이하의 액체를 말한다.

#### 4.10 금수성물질

물, 습한 공기와 접촉시 폭발 또는 인화성 기체를 방출하는 물질을 말한다.

#### 4.11 용기

고체,액체, 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직접 담은 합성강제, 플라스틱, 유리 등으로 된 것을 말한다.

### 5. 책임과 권한

#### 5.1 안전보건담당부서

5.1.1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조언

5.1.2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승인 및 제한

5.1.3 유해화학물질 취급부서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요청

#### 5.2 보건관리자

5.2.1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게 취급 물질에 대한 교육(MSDS) 실시

5.2.2 해당 공정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

5.2.3 성분의 변경에 따른 취급자의 건강장해 예방대책을 수립

#### 5.3 취급부서

5.3.1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정에 대하여 MSDS자료 게시, 경고표지 제작 및 부착

5.3.2 취급자들이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5.3.3 취급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 실시

5.3.4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보건부서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협조

#### 5.4 취급자

5.4.1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

5.4.2 취급 물질에 대한 MSDS내용을 숙지 및 주의사항 준수

5.4.3 비상사태 발생시 응급조치 및 관련부서로 통보

## 6. 업무절차

### 6.1 적용대상 물질

MSDS의 작성, 비치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다.

MSDS 작성 비치대상물질		MSDS 작성/비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질
물리적 위험물질	건강장애 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발성 물질</li> <li>- 산화성 물질</li> <li>- 인화성 물질</li> <li>- 금속성 물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독성 물질</li> <li>- 독성 물질</li> <li>- 유해 물질</li> <li>- 부식성 물질</li> <li>- 자극성 물질</li> <li>- 과민성 물질</li> <li>- 발암성 물질</li> <li>- 변이원성 물질</li> <li>- 생식독성 물질</li> <li>- 기타 건강장애유해 물질</li> <li>- 환경유해 물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사성물질</li> <li>- 의약품.의약외품</li> <li>- 화장품</li> <li>-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li> <li>- 농약</li> <li>- 사료</li> <li>- 비료</li> <li>- 식품 및 식품첨가물</li> <li>- 화약류</li> <li>- 폐기물</li> </ul>

### 6.2 MSDS의 양도 및 제공

6.2.1 화학물질 사용부서는 대상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하기 전에 제공자로 부터 MSDS를 양도 또는 제공 받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환경안전성 평가 표준서'에 의거 안전보건담당부서로 물질의 사전평가의뢰를 하여야 한다.

6.2.2 적용대상 제외 물질을 사용하는 부서는 제공자에게 MSDS적용 비대상 물질임을 서면으로 통보 받아 사본을 안전보건담당부서로 제출 하여야 한다.

6.2.3 회사에 유해화학물질을 제공하는 납품 및 생산업체는 물질의 성분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직후 10일 이내에 변경된 해당 물질의 MSDS를 회사의 취급부서 및 안전보건담당부서로 서면 통보 하여야 한다.

### 6.3 MSDS 비치 및 게시

사업장에 쓰이는 모든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MSDS자료를 다음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6.3.1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6.3.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6.3.3 사업장내 취급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 6.4 취급자에 대한 교육

6.4.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MSDS의 개요
- 2)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유해성
- 3) 응급조치, 긴급 대피요령 및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 4) MSDS의 경고표지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해당 작업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MSDS의 정보

6.4.2 유해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MSDS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훈련 절차에 따라 관련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6.4.3 교육의 실시 시기는 신규 화학물질을 반입하거나 취급자가 변경되었을 때 실시한다.

## 6.5 유해화학물질의 조달

6.5.1 총무부서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조달할 경우 국가기관이나 관련 사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받은 제조/수입/유통업자를 정하여 발주를 수행 하여야 한다.

## 7. 특기사항

- 1)분리 보관: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서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분리하여 보관.
- 2)라벨 부착: 모든 화학물질 용기에 명확한 라벨을 부착하여 내용물, 위험성, 보관 방법 등을 명시
- 3)통풍 및 환기: 휘발성 물질이나 유독 가스를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은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
- 4)화재 방지: 인화성 물질은 불꽃이나 열원으로부터 멀리 보관.
- 5)온도 관리: 상온에서 보관하되, 직접적인 햇빛을 피함.
- 6)양 제한: 최소한의 양만 작업 장소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저장소에 보관.